

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9월 3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8 . 31 이경진의원의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0. 9. 29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9.29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경진 의원)

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및 제19조의 4(정례회의 집회일등)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“제1차 정례회”에서 “제2차 정례회”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에 부합되게 하는 것으로

○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“제1차 정례회”에서 “제2차 정례회”로 변경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입법절차·형식·자구등에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10부